복공판 위에서 작업 중 이던 굴삭기 후미에 부딪쳐 추락

재 해 개 요

2017.12.20(수) 13:40경 서울 강서구 ○○동 소재 ㈜○○○○ ○○펌프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원청 소속 ○○○(철근공, 만 55세)이 복공판 위에서 토사 상차 중이던 굴삭기 후미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복공판 하부 8.0M 아래 굴착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재해 관련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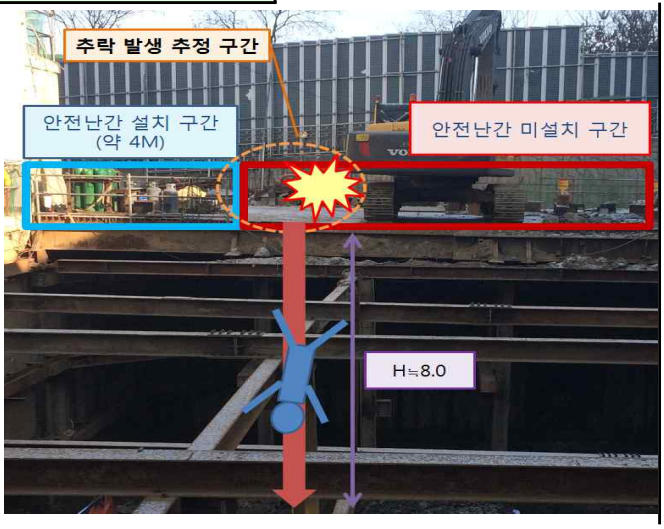

[사진] 재해발생 상황도

재해발생원인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접촉 방지 조치 미실시**

- 굴삭기 회전 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미실시하여 굴삭기 회전 중 재해자와 충돌 발생

○ **복공판 단부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 굴착저면으로부터 토사 반출 작업 시, 복공판 위에서 크람쉘 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굴삭기를 사용함으로써 단부와 같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굴삭기 작업 반경의 영향으로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작업함으로써 추락사고 발생

○ **유도자 미지정 및 신호방법 미수립**

- 굴삭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지정하고 배치하여야 하나, 현장 상황에 따라 임의 작업자를 배치하였음
- 또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나, 신호방법을 정하지 아니하여 굴삭기와 신호수간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음

재해예방대책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시 접촉 방지 조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등으로 접촉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

○ **추락 위험 장소 추락 방지 조치 철저**

- 토사 반출 작업 시, 크람쉘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복공판 단부와 같은 추락 위험이 있는 구간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준에 맞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

○ **유도자 지정 및 신호방법 수립·준수 철저**

-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 접촉 등의 방지를 위하여 유도자를 지정 및 배치하여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나 근로자는 신호방법이 정해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작업하여야 함